의안번호	2212727
의 뢰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5. 10. 2.
추계번호	25A49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3억원, 2030년 3.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8.5억원(연평균 3.7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추가재정소요 중 지방정부(17개 시·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의 재정부담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8억원(연평균 2.6억원)임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76	-	-	-	-	76	15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안 제10조)	81	82	84	86	87	419	84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제15조)	270	270	270	270	270	1,350	270
- (중앙)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15	15	15	15	15	75	15
- (지방)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합계	427	352	354	356	357	1,846	369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2	안 제7조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본계획 확정시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3	안 제8조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4	안 제9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5	안 제10조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고, 평가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 규정
6	안 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3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의무 규정
8	안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재량 규정
9	안 제15조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의무 규정
10	안 제16조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한다.	의무 규정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1	안 제17조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의무 규정
		○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2	안 제20조 (민간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3	안 제21조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정부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융자 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4	안 제24조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5조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 지역기금에 기부·출연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6	안 제26조 (교육·훈련 및 홍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7	안 제27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8	안 제28조 (국제협력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 규정
19	안 제32조(벌칙)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무 규정
20	안 제33조(과태료)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선언적·권고적 규정
2	안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3	안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추가재정소요 없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4	안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안 제10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
6	안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7	안 제13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 단, 사무처 설치의 경우 파견 등을 통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8	안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	-
9	안 제15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
10	안 제16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1	안 제17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2	안 제20조(민간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3	안 제21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4	안 제24조(시설비 등의 지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5	안 제25조(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6	안 제26조(교육·훈련 및 홍보)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7	안 제27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8	안 제28조(국제협력 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9	안 제32조(벌칙)	×	· 재정수입의 증가(미대상)
20	안 제33조(과태료)	×	· 재정수입의 증가(미대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 중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경우 기존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그 외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된 재량사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본 추계에서 제외

❑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2024.11.)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표 2] 비용추계에 사용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 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2024.11.)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7,600만원(연평균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제정안과 유사한 유사한 사회적경제 관련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제정안과 유사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47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0	117
전북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2019	8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50
평균				76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4]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76	-	-	-	-	76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단, 제정안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 수립)와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경우 기존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지 않음

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서 부문별, 시·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2억원(연평균 8,4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는 유사사례와 같이 연구용역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제하고, 제정안과 유사한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5] 제정안과 유사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60
2021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4개권역) 추신실적 평가 연구	환경부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14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5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및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53
평균				79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6]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0조)	81	82	84	86	87	419	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구성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0.8억원(연평균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연간 추가 재정소요) 민간위원 15인 × 25만원 × 연 4회 =1,500만원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소요에 필요한 민간위원은 15명(전체 위원의 1/2)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함
- (횟수)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연간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다만,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설치할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표 7] 제정안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안 제13조 및 제14조)	15	15	15	15	15	75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2.8억원(연평균 2억 5,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구성) 제정안은 구체적인 구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동 추계에서는 제정안 제15조와 동일하게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

○ (횟수 및 단가) 제정안 제15조와 동일하게 민간 위촉위원(15명)에 회의수당

(25만원/회당)과 회의 횟수(4회/연)를 적용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17개)를 곱한 2억 5,5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8] 제정안의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안 제15조)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